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455-10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

2024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제1장 경영실적 평가개요	1
제1절 의의	2
제2절 평가절차	2
제2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3
제1절 평가대상 기관	4
제2절 평가지표 체계	4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7
제3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22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23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35
제4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42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43
제2절 후속조치 등	44
[별첨] 기관별 평가편람	47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8
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4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60
4. 국제식품검역인증원	68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3
6. 한식진흥원	81
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88
8. 축산환경관리원	96

제 1 장

경영실적 평가개요

제1절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427호)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 기타공공기관은 훈령 제9조에 따라 2025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기타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5년 6월 20일까지 기타공공기관의 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제 2 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제1절 평가대상 기관

-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며, 기관별 심층평가를 위해 다음 구분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1유형(방역·검역 및 정책지원 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2유형(식품산업 및 축산환경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평가부문)
경영관리	지배구조 및 리더십,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
주요사업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 지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단, 기관 특성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일부 세부평가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배점은 평가단에서 조정한다.

2.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 평가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30	7.5**	22.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0	20	-
	소 계	50	27.5**	22.5
합 계		100	62.5**	37.5
가점 (6)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6 (1)	6 (1)	-
감점 (△2)	총인건비 관리	(△2)	-	(△2)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점검(기재부) 결과 반영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가중치에 따른 최대 변동분을 의미함

***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점검결과(기재부) 결과 반영

□ 기관별 평가지표 조정

-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유형 내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지표는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 표준화 여부 및 방법 등은 ‘평가단’이 결정할 수 있다.
- 기관별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혁신가점 중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적극 수행 및 대국민 홍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총인건비 관리 지표는 감점지표로 전환하여 평가한다. 총인건비 관리(감점)를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국정감사 등에서 세부평가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해당 지표의 득점에서 감점할 수 있다.
 - * 지적사항 예시: 장애인고용 실적 저조, 여성임원 비율 저조 등
-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이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그 중대성에 따라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 위법행위 예시: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안전·환경 법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
 -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정
 -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 감사원, 주무부처 감사 등에 따른 조치사항
 - 경찰 입건, 검찰 기소 등 수사결과
 -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국회 등 외부기관의 비위행위 적발 등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 경영관리 범주 [50점]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기관의 설립목적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6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p>② 기관의 설립목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비전·핵심가치·경영목표의 설정 및 이와 연계된 경영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p> <p>*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ESG 등을 고려한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비전·핵심가치 공유</p> <p>③ 이사회 기능 활성화와 비상임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과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p> <p>④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p> <p>* 적극행정,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규제개선,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른 경영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 및 성과</p>

(2) 윤리경영 [2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경영활동 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식별,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 윤리경영표준모델에 따른 윤리경영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비윤리적 행위 신고, 교육 실적, 중요 기록물 분류 체계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연초 시행계획 작성 후 그 이행실적을 제출(기관별 비위행위처리 모범사례 포함) * 회계담당자 교육·훈련 지원, 회계관계직원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 회계통제 규정·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및 이행 등 회계 신뢰성 제고 및 책임 강화 노력 <p>②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p> <p>③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p>※ 위(①, ②, ③)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결과 임직원이 중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거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감점(최대 0점) 가능</p>

(3) 국민소통 [4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p>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연도별 배점 반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벌점</td> <td>0점</td> <td>0 초과 1.5 이하</td> <td>1.5 초과 5.0 이하</td> <td>5.0 초과 10.0 이하</td> <td>10.0 초과 20.0 이하</td> <td>20.0 초과</td> </tr> <tr> <td>득점</td> <td>1.0</td> <td>0.8</td> <td>0.6</td> <td>0.4</td> <td>0.2</td> <td>0</td> </tr> </table>	벌점	0점	0 초과 1.5 이하	1.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득점	1.0	0.8	0.6	0.4	0.2	0
벌점	0점	0 초과 1.5 이하	1.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득점	1.0	0.8	0.6	0.4	0.2	0									
지표정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 및 개선실적을 평가한다.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p>① 평점은 기획재정부 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아래와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90점이상 우수 기관은 8:2, 85점이상 양호기관은 7:3, 80점이상 보통기관은 6:4, 80점미만 미흡 기관은 5:5 * 합산 비율 산정시 활용하는 점수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닌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임에 유의 <p>② 고객만족도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만족도 지수 = 100 - (90 - 평가년도 조사결과) × 2 * 지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p>③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상승 사: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대비 하락 사: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대비 향상도는 100점 만점으로 함 * 기준점수는 90으로 하되 전년도 조사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전년도 조사결과를 사용 <p>④ 신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기관은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로만 산출</p>														
지표정의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p>① 국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이해관계자 소통 및 참여 활성화, 국민제안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p>②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공시 우수공시기관 지정 등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실적 등을 평가한다. (계량 1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0.7): $\sum \text{월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12 \times 0.7$ ※ 월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frac{\text{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상시근로자)}}{\text{월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 \times 장애인 의무고용률(3.6%)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단, 근로자 중 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경우 소수점 이하 단위 절사 ※ 제출 증빙자료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정원 50인 미만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해당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평가대상 전 기관의 평균 점수를 부여 * 단, 의무고용 비해당기관이라도 장애인 고용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무고용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평가대상 전 기관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반영</p> <p>②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text{유공자 채용 실적} \div \text{우선고용인원} \times 0.3$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 \times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3%)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인원의 경우 소수점 이하 단위 절사 ※ 제출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 채용실태 통보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 기관 제출용)</p>
지표정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채용,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과 공정채용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 및 성과, 청년인턴제도 운영 내실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 * 블라인드 채용 및 직무수행능력중심평가, 최종 탈락자에 대한 탈락사유 피드백 제공, 고졸자·여성·무기계약직·별도직군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적절한 처우개선 등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등 비정규직 운영의 적정성 등</p>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p>②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벤처 활성화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한 직접적 민간의 일자리창출과 금융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p>③ 고졸자, 지역인재,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자) 기관별 고졸적합업무 발굴 및 고졸채용계획 수립·이행 실적 * (지역인재) 비수도권 및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비율 달성 노력 * (장애인) 장애인고용 컨설팅 이행사항 추진 등 장애인 채용 노력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채용 노력 *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북한 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 <p>④ 여성임원·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여성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른 목표 및 이행계획 적정성, 목표대비 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등 * 임원 : 본부직제상 기관장·이사·감사 관리자 :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

(2) 안전 및 환경 [6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 수준을 평가한다. (계량 2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결과 반영 ※ 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0.5점 만점으로 환산 반영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p>②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반영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구분</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r> </thead> <tbody> <tr> <td>득점</td> <td>1.0</td> <td>0.6</td> <td>0.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결과 환산점수 :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점수 :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등급 : 환산점수 낮은 순으로 상위 25% 우수 (2개), 중간 50% 보통 (4개), 하위 25% 미흡 (2개) <p>③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수준 평가 (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원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 결과 반영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국정원 평가결과</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r> </thead> <tbody> <tr> <td>득점</td> <td>0.5</td> <td>0.3</td> <td>0.1</td> </tr> </tbody> </table> <p>* 국가정보원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결측 발생시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지표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함</p>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득점	1.0	0.6	0.2	국정원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득점	0.5	0.3	0.1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득점	1.0	0.6	0.2														
국정원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득점	0.5	0.3	0.1														
지표정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한다. (계량 1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계획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 기관 배출량은 소수점이하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 <p>② 녹색제품 구매실적 (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 구매실적 산정시 기준금액: 평가연도 기준 과거 5개년* 평균 구매액 * 구매액이 평가연도 기준 과거 5개년도 구매액 평균에 5개년도 표준편차를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연도는 제외 - 구매실적: {(당해연도 구매실적금액 - 기준금액)/기준금액} × 100 - 전년대비 향상도: {(당해연도 구매실적금액 - 전년도 구매실적금액)/전년도 구매실적금액} × 100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산업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3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사업장(발주 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내부제안제도 운영,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예방 및 임산부·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p>②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재난대비계획 수립·이행실적, 관계자 교육, 재난대비 관련 예산·조직·인력 현황 등 * 재난안전상황별 대응훈련 실시, 재난·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활용 여부 등 *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의 적정성, 소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 * (사고 발생 건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후 신속 전파 및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 활동의 적정성, 사고처리·보상,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사고 이력 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등 안전사고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p>※ 위 ①, ②)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 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중대재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p>③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자체의 친환경·탄소중립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의 비계량적 노력과 성과를 확인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p>공공기관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과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의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점)</p>
세부평가내용	<p>① 민간수요 맞춤형 개방체계 구축, 협업데이터 공동생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내 기관별 개방률 상향노력 및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노력 등 * '24년 공공기관 데이터협업과제 수요제출 등 기관 간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과제발굴 및 채택된 협업과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행안부) <p>②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등 기술 실용화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구매 실적, 인증기업 대상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 정책금융 우대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실적 * 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의 혁신 제품 지정 실적, 지정을 위한 노력, 구매 실적 <p>③ 기관 보유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의 공유·이전 등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보유 미활용 특허 공유 및 기술이전(지원) 실적, 경상기술료 계약 실적, 미활용 특허 이전기업 기술지도 실적 등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계량 2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상생·협력을 위한 자체평가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 * 산출방법: 기관별 실적 ÷ 자체평가 기준 ×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자체평가 기준</th> <th>기관별 실적 (비율, %)</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지역농산물 구매</td> <td>농산물 구매총액의 50% * 산출방법: (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총액 ÷ 기관별 농산물 구매총액) × 100</td> <td rowspan="8"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구매실적</td> <td>0.4~0.8</td> </tr> <tr> <td>중소기업생산물</td> <td>구매총액의 50%</td> <td>0.3~0.5</td> </tr> <tr> <td>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td> <td>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td> <td>0.2~0.3</td> </tr> <tr> <td>여성 기업생산물</td> <td>구매총액의 5%</td> <td>0.2~0.3</td> </tr> <tr> <td>장애인생산물</td> <td>구매총액의 1%</td> <td>0.3~0.5</td> </tr> <tr> <td>기술개발생산물</td> <td>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td> <td>0.2~0.3</td> </tr> <tr> <td>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td> <td>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td> <td>0.2~0.3</td> </tr> <tr> <td>온누리상품권</td> <td>경상경비의 1%</td> <td>0.2~0.3</td> </tr> </tbody> </table>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농산물 구매총액의 50% * 산출방법: (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총액 ÷ 기관별 농산물 구매총액) × 100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0.2~0.3	여성 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3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농산물 구매총액의 50% * 산출방법: (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총액 ÷ 기관별 농산물 구매총액) × 100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0.2~0.3																											
여성 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3																											
지표정의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및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제품 구매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여부 등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협력사업 발굴 및 판로·금융지원 등</p> <p>② 기부·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자체·지역기업·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발굴 등 *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물 구매 확대, 지역 및 국제행사 참여,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p> <p>③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알리오플러스 예약 등 이용실적, 이용자 편의, 시설 개방 안내·홍보, 우수 개방시설 운영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주차장, 체육시설, 전시실, 회의실, 강당, 예식장 용도 시설 등</p>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1) 재무예산관리 [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효율적 재무 예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5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신규·폐지 사업 선정 시 기준 수립 등 타당성 확보 노력, 사업 예산 구조 변경 등) <p>②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성과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p>③ 재무성과의 전반적인 수준 및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재무성과 수준의 적정성

(2) 재무예산성과 [7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안정성, 투자 및 집행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계량 7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재무성과 관련 세부평가지표를 통해 기관의 재무집행 성과 및 집행 효율성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2개까지 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예산성과 세부평가지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 예산현액}}$ * 사업비 집행액은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산정함 ** 사업비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

4 조직운영 및 관리 [11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5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조직·인력 배분, 기능조정 발굴 * 기관 특성에 맞는 인력 배분 및 관리 등 인력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노력 및 성과 <p>② 합리적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수행능력중심평가의 도입 및 운영 성과 등 <p>③ 구성원의 역량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교류·특별승진 제도기반 구축, 보직관리(CDP) 및 전보관리 합리화,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 운영 등 <p>④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 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헌혈공가 도입 여부 등 <p>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중소·벤처기업 지원근무 실적 등), 복무·성과관리 등 인력관리의 적절성 등 운영 효과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의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및 직무급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점검(기재부) 결과 반영
지표정의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편성·집행여부 - 예산운용지침에 위반한 성과급의 부당한 재배분 - 교육비, 의료비, 퇴직금, 고용세습 및 휴직·정직·징계자 보수지급 관련 지침 등 준수 여부 - 사내대출 관련 금리·대출 한도, 면적 기준 및 LTV 적용 여부 등 *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각 기관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활용 ②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이 경영 여건이나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하게 운용되는지 여부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규정 위반 및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3) 노사관계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노사 간 협력체계,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동 법령에 따른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 ②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을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

2. 주요사업 범주 [50점]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3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p>주요사업의 목표 달성 수준을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계량·비계량 혼합 30점)</p>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주요사업 적정성 및 목표 달성도 점수는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의 목표 달성도 (A)에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감안하여 부여한 등급별 가중치 (B)를 적용하여 산출 ($A \times B$)</p> <p>② 등급별 가중치 (B)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을 감안하여 다음 6개 등급으로 설정</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등급</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h>E</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1.0</td> <td>0.95</td> <td>0.90</td> <td>0.85</td> <td>0.80</td> <td>0.75</td> </tr> </tbody> </table> <p>③ 가중치 등급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단이 검토·확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 도전성에 대한 농식품부 소관부서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 ※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목표부여, β분포, 목표대실적 등 평가방식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일반적으로 “목표대실적”은 난이도가 낮은 평가방식에 해당) *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방식의 경우, 적용된 중장기목표수준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 사업환경, 가용자원 등 대내외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해외사업의 경우, 대상국과의 외교여건 변화 등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등급	S	A	B	C	D	E	가중치	1.0	0.95	0.90	0.85	0.80	0.75
등급	S	A	B	C	D	E									
가중치	1.0	0.95	0.90	0.85	0.80	0.75									

②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등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20점)
세부평가내용	<p>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p>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 <p>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 <p>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

3.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비계량 6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기관별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1점)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 따른 5대 분야 혁신계획 점검 결과(기재부)를 다음의 환산률에 따라 반영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등급</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h>E</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1.0</td> <td>0.95</td> <td>0.90</td> <td>0.85</td> <td>0.80</td> <td>0.75</td> </tr> </tbody> </table> <p>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1점)</p> <p>③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1점) *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기관에서 성과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당 결과가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p> <p>④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도에 대한 농식품부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 *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 * 업무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및 대국민 홍보</p>	등급	S	A	B	C	D	E	가중치	1.0	0.95	0.90	0.85	0.80	0.75
등급	S	A	B	C	D	E									
가중치	1.0	0.95	0.90	0.85	0.80	0.75									

4. 총인건비 관리 (감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계량 △2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총인건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p> $\text{총인건비 인상률} = \frac{\text{평가년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p>* 총인건비의 정의는 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름</p> <p>② ‘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2.5%)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2’점의 감점을 부여</p> <p>* 다만, 일자리 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의 5%(2.6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5% 초과 10%(2.75%) 이하의 경우에는 ‘-1’점,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의 감점 부여</p>

제 3 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1.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

구분	등급	평점	비고
A등급	A ⁺	10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A ⁰	87.5	
B등급	B ⁺	75.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경우 등
	B ⁰	62.5	
C등급	C	50.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보통인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거의 동일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과 거의 동일한 경우 등
D등급	D ⁺	37.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미흡한 경우 - 과거수준의 실적에 약간이라도 미달하거나,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
	D ⁰	25.0	
E등급	E ⁺	12.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 중대한 도덕적 해이,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중대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한 경우
	E ⁰	0.0	

-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지표별 세부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해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중대한 도덕적 해이 또는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중대사고 발생 사례인 경우에는 해당지표를 0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비계량지표 중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2개 이상 기관에 동일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등 기관 간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2. 계량지표 평가방법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의 최종 득점 점수는 현 평가체계 하에서 주요사업 지표 중 기관에서 설정한 주요사업 계량지표 (30점) 점수(A)에 각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단이 확정된 등급(B)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최종점수(A × B)를 부여한다.
- 피평가기관에서 제시한 주요사업 계량지표별로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다음과 같이 6단계(S, A, B, C, D, E등급)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가중치를 계량지표 점수에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주요사업 계량지표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가중치>

등급	가중치	비고
S	1.0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이 적정하며,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경우 - 기관의 전년도 목표 대비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 및 실천한 경우
A	0.9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이 대체로 양호하며,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이 양호하며,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경우 등
B	0.9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보통인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에 대한 고려가 보통 수준인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거의 동일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과 거의 동일한 경우 등
C	0.8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미흡한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한 경우 - 과거 수준의 실적에 약간이라도 미달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
D	0.80	-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목표치에 상당히 부합하지 못한 경우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미흡하거나, 관련된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사항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 사업실적이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등
E	0.75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배분에 명백한 결점이 존재하거나, 해당 사항과 관련된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업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으며, 기관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수준조차 설정하지 않은 경우 등

- 계량지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평가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계량지표 평가방법 >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 (적용대상 등)
목표부여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3년 미만 이거나 과거 실적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 등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글로벌 실적 비교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치, 세계적 수준 등과의 격차, 비중 등을 활용하여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국제기준의 성과지표 또는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 등의 경우
중장기 목표부여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을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설정하되, 연도별 목표는 사업수행기간과 최종목표를 활용하여 단위목표를 산출하고 목표부여 방법 등을 준용하여 설정	주무부처 중기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거나 선진국 대비 하위수준인 공공서비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β 분포	최상·최하·직전년도 실적치를 감안,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추세치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목표 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중장기목표부여, β 분포, 추세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1 목표부여 평가

가. 평가방법

- 목표부여 지표의 평가방법은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 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기준치는 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향지표는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으로 하고 하향지표는 최소값으로 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치에 의한다.
-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인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120%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80%로 적용한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의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5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적용한다.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표준편차 } S = \sqrt{\frac{\sum_{i=1}^n (Y_i - \bar{Y})^2}{n}}$$

Y_i : i연도의 Y값

\bar{Y} : Y의 평균값

n : 표본기간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되지만, 기본득점 20점을 적용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평가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표준편차 극단치의 처리방법

1) 표준편차의 계산

○ 목표부여(편차)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표준편차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극단치 여부는 극단치 제외 후 4개년 편차가 극단치 제외 전 5개년 편차의 50% 이하인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준치의 조정

○ 상기 절차에 따라 극단치로 판명된 경우 극단치가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치를 조정한 후 득점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는 직전 4개년 실적치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다만, 극단치가 직전년도(t-1) 실적치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와 직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기준치를 계산하되, 직전년도 실적치의 계산 시 상향목표는 직전 전년도(t-2)실적치+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상한으로, 하향목표는 직전 전년도(t-2) 실적치-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하한으로 하여 산출한다.

*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가 극단치인 경우 기준치의 계산

구분	기준치의 계산	
극단치가 (t-1)인 경우	상향지표	$\max \left\{ \min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2) \text{ 실적치} + 2 \times \text{표준편차 (과거 5개년)} \\ (t-1)(t-2)(t-3) \text{ 3개년 실적치 평균} \end{array} \right. \right.$
	하향지표	$\min \left\{ \max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2) \text{ 실적치} - 2 \times \text{표준편차 (과거 5개년)} \\ (t-1)(t-2)(t-3) \text{ 3개년 실적치 평균} \end{array} \right. \right.$
극단치가 (t-2) 또는 (t-3)인 경우	상향지표	$\max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1)(t-2)(t-3)(t-4) \text{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 \end{array} \right.$
	하향지표	$\min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1)(t-2)(t-3)(t-4) \text{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 \end{array} \right.$

②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

- 글로벌 실적비교의 평가방법은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 수준과의 격차, 점유율 등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한다.

③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중장기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목표치와 목표 달성 연도를 정하여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이를 1~3년간 이행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장기 추세선상의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left[\left(\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right) \times a + \left(\frac{\text{실적(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 \right) \times (1-a) \right]$$

* a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1-a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산출값 상한과 하한은 각각 1과 0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시 반영 비중은 50%:50%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업무 및 사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반영비중을 달리 적용한 경우(50%:50%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해당 반영 비중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근 3년 평균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최초 도입 시 최근 3년간 실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장기 추세선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근 2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할 수 있다.
- 장기 추세선은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수준(B) 및 목표달성기간(n)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3년 단위로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주무기관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준목표, 중장기 목표수준 및 목표 달성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기준목표(A)는 평가지표의 최초 개발 시에는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다만, 3년 단위로 장기 추세선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실적의 산술평균과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를 산술평균하여 기준목표를 조정하여야 한다.
 - 중장기 목표(B)는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으로 설정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중장기 경영목표를 준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기준치는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로 하며 단위목표(α)는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B)간 차이를 목표달성기간(n)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목표달성기간(n)은 (중장기 목표 달성 예상연도-기준목표 연도)로 산출한다.

$$\text{단위목표}(\alpha) = \left| \frac{\text{중장기목표}(B) - \text{기준목표}(A)}{\text{목표달성기간}(n)} \right|$$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선형의 장기추세선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 기준목표, 단위목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a),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a)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a),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a)로 계산한다.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해당 공공기관의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a)도 조정하여 평가한다.

$$\text{조정단위목표}(\alpha') = \left| \frac{\text{중장기목표}(B) - (t-1)\text{기준목표}(A')}{\text{잔여목표달성기간}(n')} \right|$$

-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의 수준, 정책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 불가피하게 지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 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 - 1×단위목표*로 하며, 하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 + 1×단위목표*로 한다.
* 단위목표 = |{(변경된 중장기목표 - 종전 중장기목표) / 잔여기간}|
- 단,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목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중장기 목표)으로 하고, 단위목표는 최근 개선 추세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추세치 평가

가. 평가방법

- 추세치 지표의 평가방법은 과거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기준치와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 추세치 방법의 기본특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점 + 80점 × 추세치 방법으로 계산한 득점(백분율)

- 추세치 방법에 따른 득점(백분율)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 과거실적치인 X와 Y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기준치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추세선을 $\hat{Y} = a + bX$ 라 할 때

- 기준치 $Y_s = a + b X_p$

- 표준편차 $S = \sqrt{\frac{\sum_{i=1}^n (Y_i - a - bX_i)^2}{n-2} \times \left\{ 1 + \frac{1}{n} + \frac{(X_p - \bar{X})^2}{\sum_{i=1}^n (X_i - \bar{X})^2} \right\}}$

X_i = i연도의 X값, X_p = 평가연도의 X값, \bar{X} = X의 평균값

Y_i = i연도의 Y값, \hat{Y} = Y의 추정치

a, b = 회귀분석결과에 의한 모수(parameter) 추정치

n = 회귀분석기간

-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여 기준치와 표준편차를 산정한 다음 평가연도의 실적치(Y_p)가 표준정규분포상에서 어느 수준의 확률구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한다.
평가연도의 실적치가 어느 확률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적치(Y_p)값을 z값으로 표준화하여 z값이 그 이상 나올 누적확률 $\{P(z \leq z_p)\}$ 로 결정한다. 표준정규분포의 표준화값(z)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z_p = \frac{Y_p - Y_s}{S}$$

Y_p = 평가연도의 Y값, Y_s = Y의 기준치

z_p = Y_p 에 대한 표준정규분포의 표준화값(z)

S = 표준편차

- <표 1>은 평점계산에 필요한 누적확률과 표준정규분포에 따른 표준화값(z)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누적확률과 표준화값

누적확률	P _{2.474}	P _{4.947}	P _{11.928}	P _{23.973}	P _{40.682}	P _{59.318}	P _{76.027}	P _{88.072}	P _{95.053}	P _{97.527}
표준화값 (Z)	-1.965	-1.650	-1.179	-0.707	-0.236	0.236	0.707	1.179	1.650	1.965

주 : 표준화값은 표준정규분포상 누적확률에 해당하는 점의 Z값이다.

○ 확률구간 내에서의 평점(백분율) 계산은 <표 2>의 평점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 2> 확률구간과 평점계산식

확률구간	평점 계산식 (백분율)
A ⁺	$88.896 + 5.556 \times \frac{\text{실적치} - P_{95.053}}{P_{97.527} - P_{95.053}}$
A ⁰	$77.784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88.072}}{P_{95.053} - P_{88.072}}$
B ⁺	$66.672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76.027}}{P_{88.072} - P_{76.027}}$
B ⁰	$55.560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59.318}}{P_{76.027} - P_{59.318}}$
C	$44.448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40.682}}{P_{59.318} - P_{40.682}}$
D ⁺	$33.336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23.978}}{P_{40.682} - P_{23.978}}$
D ⁰	$22.224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11.928}}{P_{23.978} - P_{11.928}}$
E ⁺	$11.112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4.947}}{P_{11.928} - P_{4.947}}$
E ⁰	$5.556 + 5.556 \times \frac{\text{실적치} - P_{2.474}}{P_{4.947} - P_{2.474}}$

주 : 1. P₀₀에는 Y가 00% 이상 누적확률일 때의 z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2. 평점(백분율)의 상한치 및 하한치는 각각 100%와 0%로 한다.

3. 실적치는 평가연도의 실적치를 z값으로 표준화한 값이다.

나. 극단치 처리방법

- 추세치 평가시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더미(dummy)변수로 처리하여 감안한다. 극단치 여부는 대상년도의 실적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한 경우의 대상년도의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5 β분포 평가

- β분포 지표에 대한 평가의 경우 기준치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치 $Y = \frac{Ya + 4Ym + Yb}{6}$
 - 표준편차 $S = \sqrt{\frac{(Yb - Ya)^2}{36}}$
 - Ya : 과거실적치중 최상위 실적치
 - Yb : 과거실적치중 최하위 실적치
 - Ym : 평가직전년도 실적치
- 기준치 및 표준편차의 계산을 제외한 평점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은 추세치 평가의 경우를 준용한다.

6 목표대실적 평가

- 목표대실적 지표의 평가는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달성도로 평가한다. 목표는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목표달성도} = \frac{\text{실적}}{\text{목표}}$$

- 목표의 성격상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상향목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하향목표)로 하여 목표달성도별 평점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begin{aligned} & \circ \text{상향목표} : 20 + 80 \times \frac{Y}{1} \\ & \circ \text{하향목표} : 20 + 80 \times \frac{1}{Y} \end{aligned}$$

주 : Y = 평가년도의 목표달성도

7 기타 평가방법

- ‘총인건비관리(감점)’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하되, 목표는 「'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이며, '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2.5%)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만, 일자리 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지표 세부평가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일부 지표의 계량항목은 주무부처가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기관의 특성상 특정 비계량·계량지표(또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평가요소)의 가중치는 결측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무성과관리’ 내 자체수입증가율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자체수입비율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체수입액)에 따른 자체수입비율

자체수입 비율	45% 이상	40% 이상 ~45% 미만	35% 이상 ~ 40% 미만	35% 미만
기본득점	80점	60점	40점	20점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 다음에 제시된 공통적용사항은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예외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용어의 정의

(1) 부가가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 : 인건비의 정의를 참조하되, 계정과목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은 포함. 다만,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 *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 : 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 :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 : 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거나, 통제불능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위의 공통산식이 아닌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2) 총자산 등

- 총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등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
- ‘자본생산성’과 ‘총자산 회전률’, ‘ROA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총자산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인해 총자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자본생산성, 총자산회전율 등의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나 ‘EBITDA 대 매출액’ 지표 등과 같이 영업이익을 평가하는 지표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 ‘부채비율’ 지표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단, 자산보다 부채가 큰 기관, 자본금이 없는 기관, 금융성기관 등의 경우에는 부채/자본비율 대신 부채/자산비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채/자산비율을 사용할 경우, 부채는 당해연도말, 자산은 직전년도말 금액을 사용하되,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본의 증가(감소)는 자산의 증가(감소)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비

- ‘사업비집행률’ 지표의 평가대상인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와 자본예산의 합계로, 총세출예산(자본예산 포함)에서 인건비(일반관리비에 포함된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 경비 및 사업비성 경비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자체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포함되며, 직접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그 인건비는 제외한다.
- 직접사업비는 사업비 예산집행액 중 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 정부 출연 또는 보조로 인한 특정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업활동의 산출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업부서의 비용을 말한다. 또한, 사업비 예산집행액에서 사업비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와도 동일한 개념이다.
- 사업비 예산현액은 사업비 및 자본예산과 관련한 세출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예산의 전용 등 증감액 + 국가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지출액으로 하며,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은 낙찰차액 및 기관 내부재원 조성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예산절감액은 제외한다.
- 사업비 집행액은 사업비예산현액 중 집행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세출예산서에 별도의 사업비 항목이 없고 인건비와 경비만이 있거나, 사업비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가 사업비성 경비에 해당되어 직접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체예산을 사업비로 본다.

(4) 인건비

- 인건비는 건설중인 자산, 당기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혹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특별손실포함)에 포함된 임직원(일용잡급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제수당 등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사실상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을 포함한다.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위한 총인건비의 정의는 「‘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
 -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휴일근무·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최초지정된 연도에 정부예산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해외근무수당 등은 총인건비에 포함하되, 공무원 수준 이내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통화별 현지화표시 인건비지급액에 통화별 평가대상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통화별 원화표시 인건비 지급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화표시 해외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인건비는 총인건비인상률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변동이 있는 해당 직급내의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통합직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 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5) 평균인원, 금액 등의 계산

- 평균인원, 평균재고자산, 평균운전자본 및 차입금 평균잔액 등은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군입대·육아휴직 대체 충원자와 휴직자가 중복될 경우, 한시적(2년)으로 대체 충원자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제2조 제2호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유급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청년인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노동생산성 등 지표의 점수 산출시) 비교 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노동생산성 지표의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중인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에 대응되는 인원은 제외할 수 있다.
 -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균인원 산정 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은 포함)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특성과 제외 사유를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다.

2. 평가방법 적용요령

(1) 지표값

- 지표값은 정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수수료,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이 가격결정이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격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부 평가항목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으로 평가한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불변화 지수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국민총량지수와 기관개별지수로 구분하여 적용한 지수를 사용한다.
- 불변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가연도 실적치를 기준연도의 불변화지수로 나누어 불변 실적치로 구한다. 구체적인 불변화 방법은 각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정한다.

(2) 통제불능성의 판단

- 통제불능성은 지속가능성, 예측성, 반복성,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 (예시) 임시거액의 투자자산처분 손익 등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에 가감하여 평가하되, 동일사항에 대해 평가에 기반영된 사항은 실적치의 연속성, 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 유지

- 경영성과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수입·비용 및 인력 등의 변화, 예상치 않은 임시 대규모의 거래 및 정책사업, 정부정책 이행, 대외관계의 변화, 전염병, 상품·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 변화로 인하여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부정책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 공공부문 투자확대에 따라 부채증가 등 추가적인 경영부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계량평가지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 매출액, 자산, 부채, 관리업무비, 금융비용, 평균인원 등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경영성과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경우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시점에서 조정하지 않은 통제불능사유를 발생 이후 시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이중조정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3) 목표부여 지표의 경우, 목표설정 당시 근거로 한 향후 연도 실적 예상치(기관측 제시)가 왜곡 제시되었음이 추후 평가시점에서 확인될 때에는 경영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당초 목표치 혹은 목표부여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만점 목표치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 목표치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4) 글로벌실적비표 평가방법은 기관이 작성·제출한 실적보고서상에 글로벌 경쟁기관 등의 최근 실적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의 당해 연도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동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5) 추세치 평가와 β분포 평가방법은 기관의 과거실적과 최종년도 실적의 예상치(기관 제시)에 근거하여 추세식의 통계적 유의성과 득점의 달성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추후 실적 평가시에 평가방법을 결정한 근거가 된 기관제시 실적이나 예상치가 현저히 왜곡 제시되어 기관에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는 경영평가 목

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 혹은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립관련 법령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 사업의 불연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표 평가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만점 목표치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 목표치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으로 인해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객관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계량평가방법 및 기준 적용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7) 경영실적의 연속성·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소송 관련 충당금 전입액 등은 확정판결시까지 유예하여 평가할 수 있다.

(8) 회계기준으로 IFRS를 도입한 기관은 IFRS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연결재무제표 대신 기존 개별재무제표와 유사하게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평가를 반영한 수정재무제표(평가용 IFRS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IFRS(국제회계기준)도입의 영향을 받는 지표를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할 때는 도입 첫해에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 재무제표에서 산출된 과거 5개년의 표준편차를 사용하며, 차년도에도 동일한 표준편차를 사용할 수 있다.

○ IFRS에 따른 회계원칙 중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평가시 조정방안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	○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포상 등)는 발생주의가 아닌 과거 K-GAAP에서와 동일하게 현금주의(확정채무)로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종업원 저리대여금	○ 종업원 저리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종업원급여’는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9) 신규로 추진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인력 등은 동 사업의 성과 발생 이후(사업추진 2년 후, 3년차부터 반영)부터 평가할 수 있다.

(10) 관련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운용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기관별 편람에 이를 명시한다.

(11) 공정률 지표의 경우 경영평가의 목적이 특정 연도의 경영실적 평가이므로 누적 공정률이 아닌 당해연도 공정률의 목표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3절 외부 평가·감사 결과 등의 연계·활용

1. 필요성

-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 등을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정부평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2. 연계·활용방안

- 국가재정법에 의한 평가 중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비계량·계량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점수를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점수로 활용한다.

*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

“...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그밖에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결과 중 평가대상연도의 경영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기관간 형평성, 세부평가내용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결과는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 4 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구간은 비교평가 등급구간,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 개선도 평가 등급구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비교평가 등급구간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고,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은 기관의 과거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며, 개선도 평가 등급구간은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등 급	종합점수	수 준 정 의
탁 월 (S)	100~90점 이상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 수 (A)	90점 미만 ~8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 호 (B)	80점 미만 ~7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 통 (C)	70점 미만 ~6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 흡 (D)	60점 미만 ~50점 이상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 주 미 흡 (E)	5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제2절 후속조치 등

가. 성과급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한 바를 준용한다.

나.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단, 평가대상 연도말 기준으로 기관장·상임이사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편,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임기간에 따른 예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오류 등에 대한 조치

-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 및 책임정도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되는 지표의 하향조정(최대 0점)
 - 당초 결정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삭감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청

고의성	중대성 정도*	결과처리
고의적 (허위)	중대한 사항	- 해당지표 0점 처리한 값에서 종합평가등급 1단계 하향 조정
	경미한 사항	- 해당지표 0점 처리
비고의적 (오류)	중대한 사항	- 해당지표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및 해당 실적 수정
	경미한 사항	- 해당 실적 수정 및 그에 따른 점수 보정

* 중대성 정도의 판단 기준은 평가단에서 결정하되, 최종 결과처리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라.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사회공헌에 대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 등 공공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공헌 정도 및 기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상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준수한다.

마. 우수지표 평가 면제 조치

- 경영관리 중 2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 등급 이상(A+, A0)을 받은 지표는 해당 지표에 한해 다음연도 평가시 우수등급 이상(A+, A0)을 부여한다.

바.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시

-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 및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 신설, 기관유형 변경 등에 따라 최초로 평가받는 기관에 대해 평가제도, 경영관리 등에 대한 기초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의 경영목표·전략, 재무·인사 등 경영기법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 결과 실적부진기관 및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해당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경영개선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평가단은 차년도 평가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별첨

기관별 평가편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1. 가축방역사업	30	12	18
	(1) 가축질병시료채취 추진노력도	7	-	7
	(2) 농장에찰가축질병검색률 향상도	6	-	6
	(3)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	5	-	5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
	2. 축산물위생사업	20	8	12
	(1) 도축검사 이상보고 정확도 제고 노력	8	-	8
	(2) 축산물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	3	-	3
	(3)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1	-	1
	(4)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55	45	

1. 경영관리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환경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 (1) 재무예산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1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 가축방역사업 [30점]

(1) 가축질병시료채취 추진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채취 (주요질병, AI)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 목표 달성도 = (시료채취 실적 / 목표(계획) 채취수) x 100 * 목표(계획) 채취수 : 주요 질병, AI 시료채취 계획 채취수의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시료채취 실적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팜스(FAHM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 시료채취 계획량은 농식품부 계획*을 참조, '두수'를 기준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에참검사 추진 계획」 ** 주요질병(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 및 AI 시료 채취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2) 농장예찰 가축질병 검색률 향상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계량 6점)					
정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예찰 (예찰실시결과보고)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1. 농장예찰 달성률(목표100%) 2. 농장예찰 검색률(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농장예찰달성률(20%)</th> <th style="width: 50%;">농장예찰 검색률(8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td> </tr> </tbody> </table>	농장예찰달성률(20%)	농장예찰 검색률(8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농장예찰달성률(20%)	농장예찰 검색률(8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예찰 가축질병 검색률 향상도 = (검사의뢰건수/목표(계획)건수 X 100 X 20%) + (질병검색건수/검사의뢰건수 X 100 X 80%) ※ 산출시 고려사항 · 검사의뢰건수 : 검사의뢰서(예찰실시결과보고서) 제출건수(시·도 방역기관) · 질병검색건수 : 제출검사의뢰서(예찰실시결과보고서) 중 검색된 질병검색 건수 · 검사의뢰건수 및 질병검색건수는 기관에서 운영중인 팜스(FAHMS)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3)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신뢰할 수 있는 축산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확산차단 및 조기근절 (상향지표)						
목 표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중장기 경영목표 적용('22~'27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	95	95.7	96.4	97.1	97.8	98.5
	목표치는 인허가매칭을 시작한 '21~ '22년의 평균값(95.07점)을 계산하여 설정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 = 현행화사업 완료율(50%)+지자체 인허가 매칭율(30%) + 현장평가향상도(20%)의 합 ① 현행화사업 완료율 = 현행화 완료농장/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축산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축산농장은 농장DB관리시스템(팜스)에 등록된 연도말 축산농장(휴·폐업포함)을 말하며, 현행화완료 농장은 현행화주기 및 방법에 따라 현행화가 완료된 농장 ※ 농장정보 : 축주명, 농장명, 농장·지택주소, 품종, 농기사진 등 ② 지자체인허가 매칭율 = 매칭농장(팜스)/전체 인허가농장(지자체 새울행정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허가 농장은 지자체 새울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인허가 농장을 말하며, 매칭농장의 경우 우리본부 팜스에 등록된 농가와 매칭된 농가 ③ 현장평가 향상도 =농장정보 현장평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반이 방역지역(관리지역 등) 내의 전체농가 중 점검 농가를 선정 및 방문하여 평가 ※ 산출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종·사육규모 기준으로 방문주기를 설정하며 축산법에 정의된 가축 중 18개 축종 21개 관리항목의 정보수집 및 제공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 농장관리 환경변화 등에 따라 축종 및 관리항목은 변경될 수 있다.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12점)

② 축산물위생사업 [20점]

(1) 도축검사 이상보고 정확도 제고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계량 8점)

정 의	일반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상보고 폐기 건수 정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1. 전년대비 이상보고건 달성율(100%) 2.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이상보고건 향상율(100%) 전년대비(건수) 달성율	이상보고정확도 최고목표 : 기준치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검사이상보고건 향상율(20%) = 당해연도 이상보고 달성율 / 전년도 이상보고 달성율 × 100 ■ 도축검사 이상보고 정확도(80%)(시그마수준) = $\Phi^{-1}(\text{오류율})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율(p) = $1 - \frac{\text{폐기건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text{이상보고건(팜스시스템)}}$ - $\Phi^{-1}(p)$: 오류율이 p일 때 표준정규분포의 z값 <p style="text-align: center;">(단, $\Phi(z) = \int_{-\infty}^z \frac{1}{\sqrt{2\pi}} \exp(-\frac{x^2}{2}) d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검사를 기준으로 하며 축종은 소, 돼지, 닭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 이상보고 건수의 경우, 우리 본부에서 운영중인 위생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며, 폐기건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실적을 집계한다. <p>※ 산출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구조조정에 따른 도축장수 감소,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2) 축산물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3점)

정 의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용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위험요소 제거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안전위험요소 제거성과 = $\frac{\text{불합격건수}}{\text{이상보고건}} \times 100$ - 불합격 여부의 판단은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 이상보고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서류검사, 외부검사, 표시검사, 관능검사, 기타검사 등 이상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고한 건 ** 불합격건 : 이상보고 건 중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한 불합격 기준에 부합한 건 ※ 산출시 고려사항 - 이상보고 건수는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불합격 건수는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시행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된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3)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1점)

정 의	현물검사클레임 제로화를 통해 신뢰도향상 기반마련 및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클레임 0건)										
측정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검사클레임 제로 달성 노력 = 100점 - ∑ 클레임 발생점수(클레임 유형별 감점) - 클레임 유형별 감점 점수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성적서미작성</th> <th>현물훼손</th> <th>이상보고 미통보</th> <th>복무위반</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4점</td> <td>3점</td> <td>2점</td> <td>1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레임 건수는 감독부서인 위생검역부의 시행장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를 기준으로 함 * 연간 복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소극적 점검을 지양하고 지표의 도전성을 유지한다. 	구분	성적서미작성	현물훼손	이상보고 미통보	복무위반	점수	4점	3점	2점	1점
구분	성적서미작성	현물훼손	이상보고 미통보	복무위반							
점수	4점	3점	2점	1점							

(4)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8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1. 농식품 R&D사업 기획	13	5	8
	(1) 농식품 R&D산업기술 동향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	4	-	4
	(2) 농식품 R&D사업 기획·발굴 실적	4	-	4
	(3) 농식품 R&D사업 기획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2. 농식품 R&D사업 관리	16	7	9
	(1)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 관리 노력	5	-	5
	(2)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최소화 노력	4	-	4
	(3)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	21	8	13
	(1) 농식품 R&D 우수특허 창출 성과	7	-	7
	(2) 농식품 우수기술 확산 성과	6	-	6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55	45

1. 경영관리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환경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 (1) 재무예산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1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농식품 R&D사업 기획 [13점]

(1) 농식품 R&D산업·기술 동향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 (평가방식: 목표부여, 계량 4점)

정 의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 산업·연구개발 관련 미래 사회·환경변화 및 최신 기술동향 조사·분석 등 노력이 활용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산식 $= \frac{\text{R\&D사업 기획 반영 건수}}{\text{농식품 R\&D 동향 조사 실적 + 농식품 R\&D 기술 분석 보고서}} \times 100$</p> <p>② 농식품 R&D 동향 조사 실적 : 농식품 R&D 산업·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의 동향조사 실적(기관 누리집 등 외부에 공개된 실적으로 확인)</p> <p>③ 농식품 R&D기술 분석 보고서: 농식품 분야 미래 기술 예측,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등 R&D기술 분석보고서 발간 실적(발간등록번호 등으로 확인)</p> <p>④ ②, ③의 결과가 농산업 혁신성장, 미래농업 이슈 해결 등을 위한 R&D투자 분야 발굴 및 사업기획 등에 활용된 실적(R&D사업 기획 및 정책 발굴에 활용된 것으로 주무부처가 확인한 공문 등으로 증빙)</p>

(2) 농식품 R&D사업 기획·발굴 실적 (평가방식: 목표부여, 계량 4점)

정 의	농식품 산업·연구개발 관련 미래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및 농식품 연구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신규사업 기획·발굴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산식 = (R&D사업 기획 실적* × 0.4) +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 × 0.6)</p> <p>* R&D사업 기획 실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등 당해연도에 제출한 R&D사업 기획 보고서 실적</p> <p>**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 : 주무부처 또는 R&D사업·예산 심의부처에 당해연도에 제출한 R&D사업 제안 실적</p> <p>*** 이사회 보고 자료 또는 정부 제출 공문 등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p>
------------	---

(3) 농식품 R&D사업 기획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5점)

② 농식품 R&D사업 관리 [16점]

(1)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 관리 노력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우수성과의 산업적 활용 등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① 우수성과의 산업적 활용 관리 노력 : 기준치의 100% ②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 : 기준치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우수성과의 산업적 활용 관리 노력 평점 × 0.5)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 평점 × 0.5) ② 우수성과의 산업적 활용 관리 노력 = 당해연도 경상기술료 징수액 * 기술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 성과를 통하여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일부 또는 기술료의 일부) ** 기술료 성과 실적은 기관의 당해연도 기술료 납입 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 증빙 ③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당해연도에 도출된 SCI 논문의 mriIF(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평균값 * 목표 : 정부 R&D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도출된 SCI논문의 mriIF 평균값 **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선별한 과학기술 분야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mriIF(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 저널의 인용정보를 수치화한 영향력 지수(IF, Impact Factor), 순위보정지수(mriF,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를 활용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등으로 활용

(2)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최소화 노력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사용 기준 위반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 및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① 연구비 오집행 예방 건수 : 기준치의 110% ② 연구비 오집행 예방 금액 : 기준치의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비 오집행 예방 건수 평점 × 0.5) + (연구비 오집행 예방 금액 평점 × 0.5) ② 연구비 오집행 예방 건수 : 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 지원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자체점검을 통해 연구비 오집행을 적발한 건수를 의미(오집행을 적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 문서 등으로 증빙) ③ 연구비 오집행 예방 금액 : 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 지원과제 자체점검을 통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사례 방지 금액을 의미(오집행 적발 금액이 표기된 내부결재 문서 등으로 증빙)

(3)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7점)

③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 [21점]

(1) 농식품 R&D 우수특허 창출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계량 7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창출 성과 중 등록된 특허의 질적 우수성 수준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산식 = $\frac{\text{양질의 특허등록 실적}}{\text{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 \times 100$</p> <p>② 양질의 특허등록 실적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당해연도 등록특허 중 SMART ‘BB’ 등급 또는 K-PEG ‘B1’ 등급 이상인 특허 건수</p> <p>*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의 질적평가 방법으로 9등급 평가,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p> <p>** 특허평가시스템(K-PEG)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개발한 특허의 질적평가 방법으로 9등급 평가, Korea Patent Evaluation & Grading</p> <p>③ 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p>

(2) 우수기술 확산 성과 실적(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계량 6점)

정 의	농식품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식품 분야 우수·유망기술의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농식품 우수기술 확산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도 평균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 (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산식 = (기술인증×0.4) + (우수기술 발굴×0.3) + (기술거래 지원×0.3)</p> <p>② 기술인증 :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품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기술 등 인증 및 적용제품·전문기업 확인,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건수</p> <p>③ 우수기술 발굴 : 기술거래 전문기관 또는 기술거래장터 등 플랫폼에 등재된 농식품 분야 우수·유망기술 건수</p> <p>* 기술거래 전문기관 :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산업부)</p> <p>** 기술거래 플랫폼 : NTB 기술은행,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TLO사무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 미래기술마당 등</p> <p>④ 기술거래 지원 : 중소기업 등 농산업체 개발기술의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기술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기술거래 지원 건수</p>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8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1. 농어업재해보험 관리	16.7	6.7	10
	(1)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 확대	5	-	5
	(2) 농어업정책보험사업의 지속성 관리 노력	2.5	-	2.5
	(3)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	2.5	-	2.5
	(4) 농어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7	6.7	-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6.7	6.7	10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4	-	4
	(2) 농식품펀드 투자 성과	3	-	3
	(3)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3	-	3
	(4)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7	6.7	-
	3. 농업정책자금 관리	16.6	6.6	10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6	-	6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2	-	2
	(3)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ICT 비중 확대	2	-	2
(4)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6	6.6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55	45

1. 경영관리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환경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 (1) 재무예산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1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농업재해보험 관리 [16.7점]

(1)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5점)

정 의	농어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times \text{가중치(예산)}) + (\text{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times \text{가중치(관리인력)})\}$ 의 평균 + $\{(\text{가축재해보험 가입률} \times \text{가중치(예산)}) + (\text{가축재해보험 가입률} \times \text{가중치(관리인력)})\}$ 의 평균 + $\{(\text{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times \text{가중치(예산)}) + (\text{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times \text{가중치(관리인력)})\}$ 의 평균 * 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정책보험 ** 가중치: 사업별 예산 및 관리 인력 규모

(2) 농어업정책보험사업의 지속성 관리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2.5점)

정 의	농어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 건수} \times 0.4) + (\text{총 보험가입금액} \times 0.6)$ * 상품·제도개선 목표 달성(1점) / 보험가입금액 목표 달성(1.5점) ** 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정책보험 *** 총 보험가입금액: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금액 합계

(3)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5점)

정 의	손해평가사 교육 품질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추진 및 참여율 고취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현장교육 목표달성률×0.5) + (현장교육 참여율×0.5) [CY기준] ① 현장교육 목표달성률: 현장교육 실시 횟수 ÷ 현장교육 목표 횟수* * 정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목표 ② 현장교육 참여율: 현장교육 참여 인원 수 ÷ 실무교육 이수 인원 수* *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현장 손해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에 따라 모수로 선정

(4)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7점)

②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16.7점]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지속적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지침·운용계획 상 목표비율 대비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목표달성도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목표비율 × 100</p> <p>*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모태펀드 추가 조성액</p> <p>** 목표비율 =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계획(정기) 상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운용지침 상 모태펀드 추가조성액</p> <p>※ 산출시 고려사항 : 운용지침·계획상 조성액 및 출자목표액 변경시, 변경액 적용</p>

(2) 농식품펀드 투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자펀드의 누적 투자금액, 피투자경영체의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을 지표화하여 달성도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펀드 투자 성과 = (A×0.5)+(B×0.25)+ (C×0.25)</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text{MIN}\left[\frac{\text{자펀드 누적 투자금액}}{\text{자펀드 누적 투자목표 금액}} \times 100, 100\%\righ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 style="text-align: center;">$\text{MIN}\left[\frac{\text{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비율}}{\text{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목표 비율}} \times 100, 100\%\righ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td> <td style="text-align: center;">$\text{MIN}\left[\frac{\text{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비율}}{\text{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목표 비율}} \times 100, 100\%\right]$</td> </tr> </table> <p>* 목표설정 :</p> <p>(A) 5개년 신규투자 실적 × 105.9%*</p> <p>(B) 5개년 피투자경영체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 105.4%**</p> <p>(C) 5개년 피투자경영체의 고용증가율 × 106.1%**</p> <p>* 1+신규 벤처투자 증가율(한국벤처캐피탈협회)</p> <p>** 1+벤처기업 평균매출액 및 고용증가율(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p>	A	$\text{MIN}\left[\frac{\text{자펀드 누적 투자금액}}{\text{자펀드 누적 투자목표 금액}} \times 100, 100\%\right]$	B	$\text{MIN}\left[\frac{\text{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비율}}{\text{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목표 비율}} \times 100, 100\%\right]$	C	$\text{MIN}\left[\frac{\text{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비율}}{\text{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목표 비율}} \times 100, 100\%\right]$
A	$\text{MIN}\left[\frac{\text{자펀드 누적 투자금액}}{\text{자펀드 누적 투자목표 금액}} \times 100, 100\%\right]$						
B	$\text{MIN}\left[\frac{\text{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비율}}{\text{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목표 비율}} \times 100, 100\%\right]$						
C	$\text{MIN}\left[\frac{\text{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비율}}{\text{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목표 비율}} \times 100, 100\%\right]$						

(3)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투자지원사업(사업설명회)에 참여한 경영체의 투자유치 목표 건수와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에 등록된 신규 경영체 수를 지표화하여 투자지원사업의 확대 노력 및 추진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 (A×0.7)+(B×0.3)</p> <p>(A) 투자지원사업(IR)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건수 (B) 투자정보플랫폼(ASSIST) 등록 경영체 수</p> <table border="1" data-bbox="386 719 1129 1167"> <tr> <td data-bbox="386 719 432 936">A</td> <td data-bbox="432 719 1129 936"> $MIN \left[\frac{\text{투자지원사업 (IR)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건수}}{\text{투자지원사업 (IR)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목표 건수}} \times 100, 100\% \right]$ <p>* 목표설정: 최근 5개년 평균 투자유치 건수 대비 10% 상향</p> </td> </tr> <tr> <td data-bbox="386 936 432 1167">B</td> <td data-bbox="432 936 1129 1167"> $MIN \left[\frac{\text{플랫폼 신규등록 경영체 수}}{\text{플랫폼 신규등록 목표 경영체 수}} \times 100, 100\% \right]$ <p>* 목표설정: 전년도 농식품 벤처기업의 30%</p> <p>** 당해연도 목표가 전년 대비 감소되는 경우, 전년 목표 대비 5% 상향 값으로 당해연도 목표 설정</p> </td> </tr> </table>	A	$MIN \left[\frac{\text{투자지원사업 (IR)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건수}}{\text{투자지원사업 (IR)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목표 건수}} \times 100, 100\% \right]$ <p>* 목표설정: 최근 5개년 평균 투자유치 건수 대비 10% 상향</p>	B	$MIN \left[\frac{\text{플랫폼 신규등록 경영체 수}}{\text{플랫폼 신규등록 목표 경영체 수}} \times 100, 100\% \right]$ <p>* 목표설정: 전년도 농식품 벤처기업의 30%</p> <p>** 당해연도 목표가 전년 대비 감소되는 경우, 전년 목표 대비 5% 상향 값으로 당해연도 목표 설정</p>
A	$MIN \left[\frac{\text{투자지원사업 (IR)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건수}}{\text{투자지원사업 (IR)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목표 건수}} \times 100, 100\% \right]$ <p>* 목표설정: 최근 5개년 평균 투자유치 건수 대비 10% 상향</p>				
B	$MIN \left[\frac{\text{플랫폼 신규등록 경영체 수}}{\text{플랫폼 신규등록 목표 경영체 수}} \times 100, 100\% \right]$ <p>* 목표설정: 전년도 농식품 벤처기업의 30%</p> <p>** 당해연도 목표가 전년 대비 감소되는 경우, 전년 목표 대비 5% 상향 값으로 당해연도 목표 설정</p>				

(4)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7점)

③ 농업정책자금 관리 [16.6점]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 실시율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측정을 위해 검사 실시기관 비율을 평가 * (산식) 검사 실시기관 비율 = 검사 실시기관 수 ÷ 검사 목표기관 수 × 100 ** 검사: 정기·일반·비대면·기획검사 및 합동검사(감독기관 감사지원) *** 검사 목표기관 수: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기준(정원 × 최근 5년간 평균 1인당 검사 기관수)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에 대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에서 취급한 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측정을 위해 중점점검 대상기관 관리 노력을 평가 *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율 =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기관 수 ÷ 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 × 100 ** 검사: 정기·일반·비대면·기획검사 및 합동검사(감독기관 감사지원) *** 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 당해연도 검사계획 수립 기준 < 중점점검 대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① 검사대상기관으로 신규 편입된 기관 ② 기관경고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기관 ③ 임직원이 징계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한 기관 ④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정부자금을 회수한 지 2년이 경과한 기관 ⑤ 검사 대상 대출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검사 대상 대출금 금액과 건수가 100% 이상 증가한 기관 ⑥ 장기 미수검 기관(수검 받은 지 9년 경과 기관) ※ ①~⑥에 해당되는 전체 기관에 대해 검사실시 </div>

**(3)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ICT 비중 확대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과 전체 점검건수 대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비중 증가율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ICT 접목 및 효율화를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0.8)+(전체 점검건수 대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비중 증가율×0.2)</p> <p>①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 =</p> $\frac{\text{당해연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text{비대면검사 목표 점검건수}} \times 100$ <p>* 목표설정 : 전년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 110%</p> <p>② 전체 점검건수 대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비중 증가율 =</p> $\frac{\text{당해연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비중}}{\text{비대면검사 점검건수 목표 비중}} \times 100$ <p>*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비중 = $\frac{\text{비대면검사 점검건수}}{\text{전체 점검건수}} \times 100$</p> <p>** 목표설정 : 전년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비중 × 110%</p>

(4)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6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1.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역	33	12	21
	(1) 아시아매미나방 확산 방지 성과	11	-	11
	(2) 안전사고 관리 노력	6	-	6
	(3) 국내항만주변 아시아매미나방 밀도 관리 노력	4	-	4
	(4)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역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12	-
	2. 외래병해충 유입 조사 사업	17	8	9
	(1)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노력	9	-	9
	(2) 외래병해충 유입 조사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55	45	

1. 경영관리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환경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 (1) 재무예산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1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역 [33점]

(1) 아시아매미나방 확산 방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11점)													
정 의	인증원이 발행하는 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 선박검역을 통한 규제국가로의 매미나방 확산 방지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아시아매미나방 확산방지 성과 = 100-Σ감점(규제국 매미나방 검출선박 수×난괴 검출 정도별 가중치)</p> <p>② 규제국 매미나방 검출선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선박 검역 후 미국,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에 입항시 매미나방이 검출되어 통보된 선박의 수이며, 선박 1척당 매미나방 알덩어리(난괴)검출 정도에 따라 가중치 적용 • 국내 선박검사 이후 규제국 입항전 매미나방 분포국가를 경유한 선박은 제외함 <p>③ <난괴 검출 정도별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검출(점)</td> <td>1~3</td> <td>4~7</td> <td>8~20</td> <td>21 이상</td> <td>기타*</td>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2.0</td> <td>3.0</td> <td>5.0</td> <td>0.5</td> </tr> </table> <p>* 기타 : 평가연도 이외 기간에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박</p>	검출(점)	1~3	4~7	8~20	21 이상	기타*	가중치	1.0	2.0	3.0	5.0	0.5
검출(점)	1~3	4~7	8~20	21 이상	기타*								
가중치	1.0	2.0	3.0	5.0	0.5								
(2) 안전사고 관리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선박검역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안전사고 관리 노력</p> $= 100 - \left\{ \frac{\Sigma(\text{안전사고 발생 인원} \times \text{사고자 상해별 가중치})}{\text{선박검역 근무인원}} \right\} \%$ <p>② 안전사고 발생 인원 : “선박검사 안전수칙 지침”에 따른 선박 검사시 안전과 관련된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자의 합</p> <p>③ <사고자 상해별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사망</td> <td>중상</td> <td>중경상</td> <td>경상</td> <td>기타</td> </tr> <tr> <td>가중치</td> <td>40</td> <td>15</td> <td>5</td> <td>2</td> <td>1</td> </tr> </table> <p>1. 경 상 : 4주 이하의 통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 2. 중경상 : 4주 이상의 통원진료 혹은 2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 3. 중 상 : 뇌 등 생명 유지의 위험이 있는 주요 장기의 손상, 신체 중요 부위 상실이나 변형이나 신체 주요기능 상실 이상 4. 기 타 : 경미사고(의사 최초 진단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상해가 없는 경우 등)</p> <p>④ 선박검역 근무 인원 : 현장검역을 수행한 인원의 합 (지역 사무소 검사원 + 선박검역 관련 기간제근로자 + 본원 소속 직원 중 현장 검역 지원 인원)</p>	구분	사망	중상	중경상	경상	기타	가중치	40	15	5	2	1
구분	사망	중상	중경상	경상	기타								
가중치	40	15	5	2	1								

㉓ 국내항만주변 아시아매미나방 밀도 관리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및 목표부여(편차), 계량 4점)

정 의	국내 주요 항만 주변의 아시아매미나방 밀도 관리 노력을 측정함	
기준치	매미나방 포획 수	최근 5개년 평균실적
	난괴 제거 실적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매미나방 포획 수	(하향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90% 최저목표 : 기준치의 120%
	난괴 제거 실적	(상향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아시아매미나방 밀도 관리 노력 = 매미나방 포획 수(50%) + 난괴 제거 실적(50%)</p> <p>② 매미나방 포획수 = 평가년도 항만주변 트랩에서 포획되는 매미나방 수의 합 - 항만주변 트랩 : 매년 국내 주요항만 동일한 위치에 인증원이 설치한 트랩 507개</p> <p>③ 난괴제거 실적 = 평가년도 인증원 직원이 제거한 아시아매미나방 난괴 수의 합 (외부용역 및 실적은 제외)</p>	

(4)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역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12점)

② 외래병해충 유입 조사 사업 [17점]

(1)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9점)

정 의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노력을 측정함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노력 =</p> $= \frac{\sum(\text{평가연도 병해충 발견실적} * \text{병해충 중요도별 가중치})}{\text{조사인원}} - \text{감점}$ <p>② <병해충 중요도별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규제병해충</th> </tr> <tr> <th>잡정규제</th> <th>규제비검역</th> <th>관리</th> <th>금지</th> <th>붉은불개미</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1.0</td> <td>1.0</td> <td>2</td> <td>3</td> <td>10</td> </tr> </tbody> </table> <p>③ 조사인원 : 평가년도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조사를 위해 채용된 월별 인원의 평균</p> <p>④ 감점 기준(건별 0.5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불개미 발견시 1개 군체*의 개체수가 2,000마리(±5% 포함) 이상이거나, 2개 군체 이상일 경우 * 군체 : 알을 낳는 여왕개미와, 일개미, 병정개미 등으로 구성된 개미의 번식 및 생애주기를 조직하는 기본 단위 - 조사대상 항만내에서 항만외부로 개체가 이동하여 발견된 경우 	구분	규제병해충					잡정규제	규제비검역	관리	금지	붉은불개미	가중치	1.0	1.0	2	3	10
구분	규제병해충																	
	잡정규제	규제비검역	관리	금지	붉은불개미													
가중치	1.0	1.0	2	3	10													

(2) 외래병해충 유입 조사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8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1. 농업 핵심인력 육성 사업	20	8	12
	(1)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5	-	5
	(2)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	3.5	-	3.5
	(3)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	3.5	-	3.5
	(4)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2.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	17	7	10
	(1)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성과	2	-	2
	(2)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	3	-	3
	(3)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	3	-	3
	(4) 농식품 해외정보 서비스 활용 성과	2	-	2
	(5)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3.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13	5	8
	(1) 농업·농촌 정책 홍보 및 소통 성과	3	-	3
	(2) 식량작물 소비 홍보 성과	3	-	3
	(3) 동물복지문화 확산 성과	2	-	2
(4)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55	45

1. 경영관리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환경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 (1) 재무예산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1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20점]

(1)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수행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 (청년농업인 선발 목표 달성 × 0.7) + (청년농업인 필수교육 수료율 달성 × 0.3) ① 청년농업인 선발 목표 달성 = (선발인원 / 목표인원) × 100 ② 청년농업인 필수교육 수료율 달성 = (당해연도 수료율 / 최근 3년간 수료율 평균) × 100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인원은 농식품부 시행 공문에 명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함 · 목표인원은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명시한 목표인원 · 청년농업인 필수교육 수료 대상은 당해연도 선정자 중 자격취소자, 중도 영농포기자 등을 제외한 인원임
(2)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3.5점)	
정 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수혜자의 전문역량 개발 성과를 측정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농업인력 양성률 = (A + B) / 2 * A = 집합교육 이수 실적/집합교육목표 × 100, B = 온라인교육 수료자 실적/온라인교육목표 × 100 <p>※ 산출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이수자 실적 : 농업교육사업 집합교육을 이수한 실적 · 집합교육 목표(이수자) : 농업교육사업 계획된 집합교육 인원 · 온라인교육 수료자 실적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수료자 실적 · 온라인교육 목표(수료자) : 농업교육포털 계획된 온라인교육 수료자 인원 * (실적) 집합교육 이수자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완료보고서 온라인교육 수료자 : 농업교육포털 통계정보자료 추출 * (목표) 집합·온라인교육은 사업기본(세부)계획서의 목표치를 적용하며, 목표 미지정시 타 운영계획 등으로 대체

(3)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계량 3.5점)

정 의	기관의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실행 준비를 지원한 노력과 실제 귀농귀촌을 실행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table border="1"> <tr> <td>① 예비 귀농귀촌인 지원 성과</td> <td style="text-align: right;">100%</td> </tr> <tr> <td>② 귀농귀촌인 실행 성과</td> <td style="text-align: right;">31.5%</td> </tr> </table>	① 예비 귀농귀촌인 지원 성과	100%	② 귀농귀촌인 실행 성과	31.5%
① 예비 귀농귀촌인 지원 성과	100%				
② 귀농귀촌인 실행 성과	31.5%				
측정 산식 및 변수	<p>▪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 = (예비 귀농귀촌인 지원 성과 × 0.5) + (귀농귀촌인 실행 성과 × 0.5)</p> <p>① 예비 귀농귀촌인 지원 성과 =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 수) ×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 당해연도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으로서 귀농귀촌 준비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상담·교육·체험·정보제공)를 귀농귀촌종합센터로부터 수혜받은 자 *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 : 향후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잠재고객(희망DB)으로서 당해연도 신규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 <p>② 귀농귀촌인 실행 성과 = (최근 3년간 교육·상담자 중 귀농 정책자금을 받은 자 / 당해연도 귀농 정책자금을 받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교육·상담자 중 귀농 정책자금을 받은 자 : 최근 3년간 기관의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수료생 및 상담자 중 귀농 정책자금을 받은 자(중복제거) * 당해연도 귀농 정책자금을 받은 자 : 당해연도 농식품부의 귀농 창업자금을 실행한 모든 인원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귀농귀촌인 지원 성과 데이터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에서 추출함 · 귀농귀촌인 실행 성과 데이터 중 교육·상담자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농협 연계자료 등에서 추출함 · 귀농귀촌인 실행 성과 목표치는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성과지표 목표치를 반영하여 설정 				

(4)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8점)

②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 [17점]

(1)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계량 2점)	
정의	데이터 고도화 및 품질관리 체계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농업 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직전년도 실적치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성과(건) = 스마트팜 데이터 이용 건수 + 팜맵 데이터 이용 건수 ※ 산출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데이터 이용 건수는 '스마트팜코리아' 내 데이터마트의 환경, 제어, 생육 등 데이터셋 다운로드 건수로 산출 · 팜맵 데이터 이용 건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및 기관 자체 데이터 제공 건수를 종합하여 산출
(2)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계량 3점)	
정의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지원체계 강화 및 농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점) =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실적(대국민) × 0.6)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이용실적(업무담당자) × 0.4) ①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실적(대국민) : 농업ON 제공 데이터 이용 건수 +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신청 건수 + 기업체 대상 데이터 발굴·이용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ON 제공 데이터(서비스) : 농업인 마이데이터, 농식품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②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이용실적(업무담당자) : 데이터맵(카탈로그) 이용 건수 + GIS서비스 이용 건수 + 분석서비스 이용 건수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마이데이터 : 정보 주체인 국민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 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산출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는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내 이용 현황 통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산출

(3)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의	농업인의 비대면 사업신청 및 온라인 서비스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농림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이 간편하게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업무담당자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사업 표준화 및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 행정효율화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점) = (디지털 농정서비스 이용실적 달성률(농업인) × 0.6)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만족도 달성률(업무담당자) × 0.4)</p> <p>① 디지털 농정서비스 이용실적 달성률(농업인) : 당해연도 이용실적 / 당해연도 이용실적 목표 × 100</p> <p>* 농업인의 공익직불 간편 신청 등 농림사업 비대면 신청,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등 사업 신청 및 서비스 이용 건수</p> <p>②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만족도 달성률(업무담당자) : 당해연도 만족도 실적 / 당해연도 만족도 목표 × 100</p>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농정서비스 이용실적 목표는 목표부여 방식 적용 * 최고목표 : 기준치(전년도 실적)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만족도 목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 사업 성과지표 목표치를 반영하여 설정

(4) 농식품 해외정보 서비스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계량 2점)	
정의	농식품 분야 FTA 대응을 위한 해외정보 제공 확대 및 활용 증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p>▪ 농식품 해외정보 서비스 활용 성과(점) = (정보등록 건수 × 0.5) + (정보 활용 건수 × 0.5)</p> <p>① 정보등록 건수 : 연간 제공 농식품 FTA활용정보서비스 정보등록 건수</p> <p>② 정보활용 건수 : 농식품 FTA활용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연간 조회 수</p>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등록 건수는 FTA체결정보, 국내외 수출입, 수급 통계DB, 국개개황, HS도감 등 FTA 관련 DB구축 건수에 대한 시스템 통계조회 결과 활용 · 정보활용 건수는 농식품 FTA활용정보서비스의 서비스별 이용자 활용 조회 수 결과 활용

(5)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7점)

③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13점]

(1) 농업·농촌 정책 홍보 및 소통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의	다양한 매체 및 디지털 기반 정책 홍보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 확산과 대국민 소통·체험 기회(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목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 농업·농촌 정책 홍보 및 소통 성과(%) = (농업·농촌 정책 홍보 확산 성과 × 0.5) + (대국민 도농소통 성과 × 0.5)</p> <p>① 농업·농촌 정책 홍보 확산 성과 = (정책홍보 확산 실적* / 정책 홍보 확산 목표) × 100</p> <p>* 농업·농촌 정책 홍보 확산 실적 : 농업·농촌 정책 지원 및 홍보를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 지원 중인 SNS 채널 구독자 수 + 온라인 서비스 방문자 수</p> <p>② 대국민 도농소통 성과 = (대국민 도농교류 활성화 실적* / 대국민 도농교류 활성화 목표) × 100</p> <p>* 대국민 도농교류 활성화 실적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대외 인지도 × 0.6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대외 홍보 만족도 × 0.4)</p>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정책 홍보 확산 목표는 전년도 실적 × 110% · 대국민 도농소통 활성화 목표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성과지표 목표치를 반영하여 설정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대외 인지도 : 관람객 및 참여 농가·기업 대상 박람회 대외 홍보 노력과 성과조사에 따름(외부 전문기관 조사) * 5점 리커트 척도 방식 점수 부여 후 100점 기준 환산
(2) 식량작물 소비 홍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의	일반국민 대상 식량작물 관련 소비 홍보를 통한 쌀 중심 식습관 형성 및 소비촉진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목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 식량작물 소비 홍보 성과(%) =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성과 × 0.7) + (천원의 아침밥 지원 성과 × 0.3)</p> <p>①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성과 = (쌀 소비촉진 홍보 성과* / 쌀 소비촉진 홍보 목표 × 0.5) + (쌀 홍보 온라인채널(미소곡간) 운영 성과** / 쌀 홍보 온라인채널(미소곡간) 운영 목표 × 0.5) × 100</p> <p>* 홍보 접촉 후 쌀 중심 식습관 및 구매 행동 변화 향상 수준 응답(5점 리커트 척도) 중 '긍정'과 '매우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p> <p>** 쌀 홍보 대표채널(미소곡간 : 블로그 + 유튜브) 구독자 수</p> <p>② 천원의 아침밥 지원 성과 = (식수인원 / 목표인원) × 100</p>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소비촉진 홍보 목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설정 · 쌀 소비촉진 홍보 성과 : 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름(외부 전문기관 조사) · 쌀 홍보 온라인채널(미소곡간) 운영 목표는 전년도 실적 × 110% · 쌀 홍보 온라인채널(미소곡간) 운영 성과 : 채널 운영 보고서 · 천원의 아침밥 목표인원 : 정부 지원 예산 / 2,000원

(3) 동물복지문화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의	일반국민의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정보 이용 제공을 통해 동물보호복지문화에 대한 대국민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70.532%
측정 산식 및 변수	<p>▪ 동물복지문화 확산 성과(%) = (동물보호복지 교육 수료율 × 0.5) + (동물사랑배움터 정보이용자 증가율 × 0.5)</p> <p>① 동물보호복지 교육 수료율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실적 + 동물보호복지 오프라인 교육실적) / 당해연도 교육목표인원 × 100</p> <p>② 동물사랑배움터 정보이용자 증가율 = (당해연도 동물사랑 배움터 정보이용자 수 - 전년도 동물사랑배움터 정보이용자 수 / 전년도 동물사랑배움터 정보이용자 수) × 100</p>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실적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교육이수 실적 · 동물보호복지 오프라인 교육실적 : 동물보호복지 오프라인 교육이수 실적 · 당해연도 교육목표인원 : 농식품부가 당해 목표로 설정한 교육인원 · 동물사랑배움터 이용자 수 :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 수

(4)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5점)

한식진흥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1.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13	6	7
	(1) 한식산업 조사·연구 확산 성과	7	-	7
	(2)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6	6	-
	2. K-미식 붐 활성화	30	10	20
	(1) 국내 한식 확산 거점 활성화	7	-	7
	(2) 국내외 한식당 및 기업·단체 지원 노력	6	-	6
	(3) 한식 영셰프 육성 및 창업 지원 성과	7	-	7
	(4) K-미식 붐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10	-
	3.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7	4	3
	(1)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노력	3	-	3
	(2)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55	45

1. 경영관리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환경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 (1) 재무예산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1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한식 진흥 기반 조성 [13점]

(1) 한식산업 조사·연구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 의	한식산업의 학술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한식산업 조사·연구의 대외 이용량 및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① 한식산업 조사·연구 이용량 : 100% ② 한식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결과 : 우수(S)												
측정 산식 및 변수	한식산업 조사·연구 확산 성과 $= ① \left(\frac{\text{당해년도 한식산업 조사·연구 이용량}}{\text{목표 한식산업 조사·연구 이용량}} \times 70\% \right)$ $+ ② (\text{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평가 결과} \times 30\%)$ ① 한식산업 조사·연구 이용량 = $\frac{\text{당해년도 한식산업 조사·연구 이용량}}{\text{목표 한식산업 조사·연구 이용량}}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 이용량 : 진흥원 발간 국내외 한식 관련 조사·연구 자료의 학술 연구 플랫폼(DBpia) 이용 실적, 국가통계포털(KOSIS)의 「한식산업 실태조사」 이용 실적 등의 합 · 목표 연구·조사 이용량 : 전년도 실적의 110% ②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산업 실태조사」 품질진단 결과 6개 등급으로 설정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등급</th> <th>우수(S)</th> <th>양호(A)</th> <th>보통(B)</th> <th>주의(C)</th> <th>미흡(D)</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1.0</td> <td>0.90</td> <td>0.80</td> <td>0.70</td> <td>0.60</td> </tr> </tbody> </table> <p>※ 통계청 발표 '2024년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별 평가 결과' 활용</p>	등급	우수(S)	양호(A)	보통(B)	주의(C)	미흡(D)	가중치	1.0	0.90	0.80	0.70	0.60
등급	우수(S)	양호(A)	보통(B)	주의(C)	미흡(D)								
가중치	1.0	0.90	0.80	0.70	0.60								
(2)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점)													

② K-미식 붐 활성화 [30점]

(1) 국내 한식 확산 거점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및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 의	한식 확산 거점인 '한식문화공간 이음' 활성화 노력에 따른 한식 쿂�클래스 외국인 체험객 및 한식 문화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p>① 한식 쿂�클래스 외국인 참여실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p>② 한식 문화프로그램 참여실적 : 100%</p>
측정 산식 및 변수	<p>국내 한식 확산 거점 활성화</p> <p>= ① (한식 쿂�클래스 외국인 체험객 실적 × 60%) + ② (한식 문화프로그램 체험객 실적 × 40%)</p> <p>① 한식 쿂�클래스 외국인 참여실적 = $\frac{\text{당해년도 외국인 참여인원}}{\text{목표 외국인 참여인원}} \times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참여인원 : 한식문화공간 이음 주관 국내외 온·오프라인 쿂�클래스 참여 외국인 수 (한식문화공간 이음 배움터) · 목표 외국인 참여인원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기준 <p>② 한식 문화프로그램 참여 실적 = $\frac{\text{당해년도 한식문화체험인원}}{\text{목표 한식문화체험인원}} \times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문화 체험인원 : 한식문화공간 이음 주관 내·외국인 대상 한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한식갤러리, 한식도서관 등 체험 프로그램) · 목표 한식문화 체험인원 : 전년도 실적의 110% <p>※ 산출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부터 추진되어 목표대실적 평가방법 적용, 3년차 실적 보유시 목표부여(편차) 방식 전환 예정

(2) 국내외 한식당 및 기업·단체 지원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계량 6점)

정 의	국내외 한식 확산을 위한 한식당 및 기업·단체 지원 노력의 결과(상향지표)를 평가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한식당 지원 실적 : 100% ② 관련 기업·단체 지원 실적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p>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 ① (한식당 지원실적 x 50%) + ② (관련 기업·단체 지원실적 x 50%)</p> <p>① 한식당 지원 실적 = $\frac{\text{당해년도 지원 한식당수}}{\text{목표 한식당수}} \times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한식당 수 :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참여한 한식당 수(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인턴십 연계 한식당 등) · 목표 한식당 수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의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신규 사업 및 평가대상 실적치 3년 미만으로 목표대실적 평가방법 적용 <p>② 관련 기업·단체 지원 실적 :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참여한 관련 기업 및 단체 수(해외한식당협의체, 재외공관 등)</p> <p>※ 산출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 내역 변동에 따라 매년 대상 사업 일부 변동 가능

(3) 한식 영세프 육성 및 창업 지원 성과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 의	현장 수요 맞춤형 한식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창업 멘토링 지원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멘토링 참여 예비 창업자 신규 창업 실적 : 30% ② 멘토링 참여 기존 창업자 매출 증가율 :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한식 영세프 육성 및 창업 지원 성과 = ① (멘토링 참여 예비 창업자 신규 창업 실적 x 40%) + ② (멘토링 참여 기존 창업자 매출 증가율 x 60%) ① 예비창업자 신규 창업 실적 = (신규 창업자 수/멘토링 참여 예비 창업자 수) × 100 · 신규 창업자 수 : '25년 2월 내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준 · 멘토링 참여 예비 창업자 수 : 청년(영세프) 창업 멘토링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과정을 수료한 창업 준비자 ② 기존 창업자 매출 증가율 = (멘토링 시작 후 매출액/멘토링 시작 전 매출액)× 100 · 멘토링 시작 전·후 매출액 : 2023년도 및 2024년도 동일시기 매출액 비교 ※ 산출 시 고려사항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6개월) 등으로 확인 - 신규 사업으로 평균 매출 증가율 목표치 110% 설정

(4) K-미식 붐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10점)

③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7점]

(1)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노력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지역 향토음식 보존 및 계승 목적의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① 예산 확보 노력 : 100% ② 예산 확보율 : 100% ③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 10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노력 = ① (예산 확보 노력 x 20%) + ② (예산 확보율 x 60%) + ③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x 20%) ① 예산 확보 노력 = (사업설명 및 업무 협의 실적/목표 협의 횟수) × 100 · 사업설명 및 업무 협의 실적 :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수시배정예산 해제를 위한 사업설명 및 업무 협의 횟수 · 목표 협의 횟수 : 10회 ② 예산 확보율 = (수시배정예산 해제액/수시배정예산액) × 100 · 수시배정예산 해제액 :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예산으로 정한 '2024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사업 예산 중 해제되어 실제로 교부된 금액 · 수시배정예산액 : '2024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사업 예산(5.5억) ③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 향토음식 진흥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반공모 단계별 추진 실적 및 성과			
	추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용역 공모 게시	사업설명회 개최	설계공모안 심사 및 선정
	득점	40점	70점	100점

(2)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4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1.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6	7	9
	(1) 입주기업 지원 성과	6	-	6
	(2) 인력양성지원 성과	3	-	3
	(3)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2. 비즈니스 지원 사업	15	6	9
	(1) 청년창업 지원 성과	5	-	5
	(2) 판로개척 지원 성과	4	-	4
	(3)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6	-
	3. 기술 지원 사업	19	7	12
	(1) 장비활용 촉진 성과	7	-	7
	(2) 제품 출시 성과	5	-	5
(3)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55	45	

1. 경영관리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환경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 (1) 재무예산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1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1]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6점]

(1) 입주기업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6점)	
정 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관리 등을 통한 고용창출 성과와 매출액을 평가한다.
목 표	목표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산식 = (입주기업 매출증가 실적/목표) x 50% + (입주기업 고용증가 실적/목표) x 50%</p> <p>② 해당연도 말 기준 입주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입주기업 매출증가 실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3개년 연평균 증가율로 하며, 매출증가 목표는 국가승인통계(제399003호)인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발표)’의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의 110%를 기준으로 한다.</p> <p>④ 입주기업 고용증가 실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평균고용인원 전년대비 증가율로 하며, 목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3년 연평균 성장률로 한다</p> <p>⑤ 고용·매출 통계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결산이 확정된 직전년도 매출액·고용증가율을 평가한다</p>

(2) 인력양성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편차, 계량 3점)

정 의	식품분야 현장실습 및 실무형 교육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성과와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① 현장실습 지원성과 - (최고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최근 3개년도) -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최근 3개년도) ② 식품전문인력 양성노력: 목표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력양성지원 성과 = (현장실습 지원 성과 × 50%) + (식품 전문인력 양성 노력 × 50%) ② 현장실습지원성과 = (취업률 증가실적/취업률 증가목표) × 100 * 목표설정 : 3개년 목표부여(편차)평가방식 적용 ** 최근 2개년 수혜자들의 취,창업 성과를 측정, 단, 당해연도의 수혜자는 대학교 4년, 고등학교 3학년만 반영 ③ 식품전문인력양성노력 = $\left(\frac{\text{식품실무교육수료인원}}{\text{식품실무교육목표인원}} \right) \times 100$ * 식품 실무교육 목표인원은 전년도 수료인원의 120%로 설정한다

(3)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7점)

② 비즈니스 지원 사업 [15점]

(1) 청년창업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5점)

정 의	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창업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목표) 기준치 + 1 × 표준편차(최근 4개년도) -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최근 4개년도) * (기준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3개년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창업지원성과 = $\frac{(\text{창업건수} + \text{제품출시건수})}{\text{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팀수}} \times 100$</p> <p>② 창업 건수는 예비창업팀이 당해연도에 사업자 등록한 기업의 건수로 함</p> <p>③ 제품출시 건수는 초기창업팀이 당해연도에 품목제조보고 신청 후 승인이 이루어진 제품의 건수로 함</p> <p>④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팀 수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되어 협약체결 한 팀 수로 함</p> <p>⑤ 창업 건수와 제품출시 건수는 팀당 최대 1건으로 함</p> <p>⑥ 창업 성과의 목표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목표) 기준치 + 1 × 표준편차(최근 4개년도) -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최근 4개년도) * (기준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3개년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2) 판로개척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식품기업 마케팅 지원 성과향상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과 지원을 통한 식품기업의 판로개척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목표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판로개척성과 = 참여기업 목표달성도× 30% + 매칭성과 목표달성도 × 20% + 매출발생건수 목표달성도× 50%</p> <p>② 참여기업은 마케팅판매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함</p> <p>③ 참여기업 목표달성도 = (참여기업 실적/참여기업 목표) ×100 * 전년 실적 대비 110% 상향</p> <p>④ 매칭성과 목표달성도 = (매칭건수/매칭목표건수) × 100 * 해당 세부지표는 마케팅판매지원사업으로 발생된 거래중개(매칭) 실적을 의미함 ** 푸드폴리스마켓은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의 행사에서 발생한 참가기업 거래 실적, 푸드비즈온 협력업체 찾기 매칭 실적 및 바이어상담회, 박람회 등 상담매칭 실적 *** 2개년 평균 실적의 120% 상향</p> <p>⑤ 매출발생건수 목표달성도 = (매출발생건수/매출발생목표건수) × 100 * 해당 세부지표는 매칭성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확인 실적을 의미함 (구매의향서(mou), 인보이스, 주문서(P.O), 수출면장 등 거래확인이 확인된 결과보고) ** 2개년 평균 실적의 120% 상향</p>

(3)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6점)

③ 기술 지원 사업 [19점]

(1) 장비활용 촉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 의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식품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목표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장비활용촉진성과 = (장비가동달성도 × 40%) + (장비활용달성도 × 60%)</p> <p>② 장비가동 달성도 = $\left(\frac{\text{장비가동률 실적}^*}{\text{장비가동률 목표}^{**}}\right) \times 100$</p> <p>* 장비가동률 = $\left(\frac{\text{장비가동시간}^1}{\text{장비가용시간}^2}\right) \times 100$</p> <p>** 장비가동률 목표: 전년 장비가동률 대비 101%(임계치 도달)</p> <p>1) 장비 가동시간: 장비 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실질가동시간: 시험분석 계측 교육 등을 위해 장비를 가동한 시간</p> <p>- 보조가동시간: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장비를 가동한 시간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p> </div> <p>2) 장비 가용시간: 근무일수 × 8시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연간 근무일수: 주5일 × 50주 = 250일</p> </div> <p>장비가동률 측정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진흥원 보유장비 중 3,000만 원 이상 장비로 한함</p> <p>③ 장비활용 달성도 = $\left(\frac{\text{장비 활용 실적 건수}^*}{\text{장비 활용 목표 건수}^{**}}\right) \times 100$</p> <p>* 장비활용 실적 건수 : 기술장비 활용 건수¹⁾ + 생산장비 활용 건수²⁾ + 교육장비 활용 건수³⁾</p> <p>1) 기술장비 활용 건수 = 기술장비 공동활용 건수 + 시험분석 건수</p> <p>2) 생산장비 활용 건수 = 생산장비 공동활용 건수 + 시제품 제작 건수</p> <p>3) 교육 장비 활용 건수 = 실무교육 활용 건수 + 실습교육 활용 건수</p> <p>** 장비활용 목표 건수: 전년 장비활용 실적 건수의 110%</p>

(2) 제품 출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식품기업 기술·생산 지원을 통한 제품 출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전년 대비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제품출시 성과 = (기술개발제품출시달성도 × 60%) + (네트워크 제품출시 달성도 × 40%)</p> <p>* 기술개발 제품출시 달성도 = $\left(\frac{\text{기술개발제품실적}}{\text{기술개발제품목표}}\right) \times 100$</p> <p>** 네트워크 제품출시 달성도 = $\left(\frac{\text{네트워크제품실적}}{\text{네트워크제품목표}}\right) \times 100$</p>

(3)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7점)

축산환경관리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	10	2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	6	-
	(2) 윤리경영	2	2	-
	(3) 국민소통	4	2	2
	2. 안전 및 책임경영	15	9	6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1
	(2) 안전 및 환경	6	3	3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	2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 관리	12	5	7
	(1) 재무예산관리	5	5	-
	(2) 재무예산성과	7	-	7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1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5	5	-
	(2)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중심 보수체계)	3 (1.5)	3 (1.5)	-
	(3)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5	15	
주요 사업 (50)	1. 축산환경관리사업	20	8	12
	(1) 친환경 축산농장 지정 확대	7	-	7
	(2)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컨설팅 만족도 조사	5	-	5
	(3) 축산환경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8	-
	2.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17	7	10
	(1)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	5	-	5
	(2) 에너지화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5	-	5
	(3)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3. 디지털 기반 구축사업	13	5	8
	(1)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화	4	-	4
	(2)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	4	-	4
(3) 디지털 기반 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소 계	50	20	30	
합 계	100	55	45	

1. 경영관리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12점]

- (1) 리더십 및 전략기획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5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환경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창업 및 경제활성화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2점]

- (1) 재무예산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7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1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축산환경 관리사업 [20점]

(1) 친환경 축산농장 지정 확대(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7점)

정 의	농가 스스로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축산농가를 지정·확대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친환경 축산농장 지정 비율(호) = $\frac{\text{친환경 축산농장 지정 수}}{\text{(깨끗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times \frac{\text{전체 농가수}}{100}$</p> <p>* 지정 관련(신규, 재지정 평가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명)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p> <p>* 전체 농가수: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농가수</p> <p>②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신청한 축산농장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검증(현장평가), 컨설팅, 사후관리,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농장 육성</p> <p>③ '23년도 지정 실적기준으로 각 연도별 도전적 목표 설정</p> <p>* 깨끗한 축산농장: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대책 목표 연계('30년까지 1만호 조성)</p>

(2)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 만족도(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5점)

정 의	축산환경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축산농가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해 매년 만족도 점수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축산환경 교육·컨설팅 만족도(점) = (교육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 0.5) + (컨설팅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 0.5)</p> <p>* 해당연도 교육·컨설팅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외부 전문기관) 실시 및 결과 피드백</p> <p>② 축산환경 교육: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온라인·현장실습 교육), 축산환경 컨설턴트 보수교육,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 교육 등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p> <p>③ 축산환경 컨설팅: 축산악취개선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등 선정된 컨설턴트의 축산환경 컨설팅 받은 축산농가 대상으로 조사</p> <p>④ 해당연도 교육 만족도는 전년도 결과와 최근 3년(해당연도 포함) 평균 결과 중 높은 실적에서 상향 3% 목표 설정</p>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8점)

②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17점]

(1)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5점)

정 의	기존 퇴비·액비화 중심에서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 비중을 확대하여 양분관리·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구축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만톤) = 연간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 합산</p> <p>*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 방식: 기존 퇴비·액비화를 제외한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플라스틱, 수출 등</p> <p>② 선정평가, 설계 기술검토, 사업관리를 통한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관리</p> <p>- 운영중인 시설의 기술진단을 통한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로 가동률 제고로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 기반 마련</p> <p>③ 지난 4년간('20~'23년) 다각화 처리량 증가 추이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처리량을 추정, 추정치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도전적 목표 설정</p> <p>* 처리용량은 300일 기준 산정</p>

(2) 에너지화시설 온실가스 감축량(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5점)

정 의	가동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에너지화시설 온실가스 감축량(tCO₂eq/년)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량</p> <p>- 실제 가동중인 에너지화시설 기준으로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 준용)</p> <p>* 방법론: '농촌지역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24.3.8. 5차 개정)</p> <p>* 근거: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https://ors.gir.go.kr/ors/)</p> <p>-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① 베이스라인 배출량 - ② 사업 배출량 - ③ 누출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60%;">내용</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베이스라인 배출량</td> <td>- 가축분뇨, 음식물류, 잔재물 등 처리 - 전력생산 - 열에너지 사용</td> <td>온실가스 감축량</td> </tr> <tr> <td>② 사업 배출량</td> <td>-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td> <td rowspan="2">온실가스 배출량</td> </tr> <tr> <td>③ 누출량</td> <td>-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량</td> </tr> </tbody> </table> <p>③ 지난 3년간('21~'23년) 온실가스 감축량 평균치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10% 이상 상향 목표 설정</p>	구분	내용	비고	① 베이스라인 배출량	- 가축분뇨, 음식물류, 잔재물 등 처리 - 전력생산 - 열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량	② 사업 배출량	-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③ 누출량	-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량
구분	내용	비고										
① 베이스라인 배출량	- 가축분뇨, 음식물류, 잔재물 등 처리 - 전력생산 - 열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량										
② 사업 배출량	-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③ 누출량	-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량											

(3)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7점)

③ 디지털 기반 구축사업 [13점]

(1)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화(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축산환경 정보 DB 구축률(%) = $\frac{\text{정보가 DB화된 축산농가 수}}{\text{직전연도의 전국 주요축종* 축산농가 수}} \times 100$</p> <p>* 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p> <p>② 축산농가('22년 축산환경실태조사기준, 102,422호)의 축산환경 및 ICT를 활용한 악취측정 정보의 DB화(포털형식 시스템 개발)</p> <p>③ '23년도 실적기준으로 연도별 2.5%p 이내 상향 목표 설정</p>

(2)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축산계에서 발생하는 질소, 인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의 근거자료를 마련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축산농가 양분부하 map 작성율(%) = $\frac{\text{양분 발생량 조사 시·군}}{\text{전국 시·군(152개)}} \times 100$</p> <p>* 축산계의 영향이 적은 광역시 등을 제외한 152개 시·군 목표</p> <p>② 전국 축산농가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시·군 양분부하량 map 작성 ('22년 조사자료 포함)</p> <p>- 가축분뇨 처리방법별(자가, 위탁)로 추가 분류하여 map 작성</p> <p>③ '23년도 실적기준으로 연도별 9%p 상향 목표 설정</p>

(3) 디지털 기반 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점)